

美國 聯邦海事委員會의 代替的 紛爭 解決方案에 관한 小考

- 最終 規則 分析을 中心으로 -

박 영 태* / 김 응 진**

〈 목 차 〉

- I. 序論
- II. 美國 ADR의 一般的 概觀
- III. 美國 聯邦海事委員會의 ADR 最終 規則 分析
- IV. 最終 規則 確定에 따른 國內 海事關聯業界 對應 方案
- V. 結論
- < 參考文獻 >
- < Abstract >

* 東義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助教授, 經營學博士(gregory@dongeui.ac.kr) ·

**協成大學校 流通情報學科 副教授, 經營學博士(wwjkim@netsgo.com).

I. 序 論

EC시대 상거래는 기존의 거래와는 달리 물리적 제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분쟁 역시 국내 분쟁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이유로 인해, 각국의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 따른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국제적 합의 없이는 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마다 구체적인 시행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국제적 합의도출에 의한 법기준 제정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적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활성화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분쟁의 조정 및 해결절차들은 모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도 최소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바,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만족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 실제 해사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 연방해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연유로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¹⁾의 방법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발전될 것임을 직시하고, 2001년 5월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DR의 개념과 절차들에 관하여 일반적인 개관을 살펴본 후, 미 연방해사위원회의 ADR 최종 규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DR 최종 규칙 확정에 따른 국내 해사관련업계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여 보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 ADR을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裁判外的’, ‘訴訟外的’, ‘訴訟代替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송상현,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의 理念과 展望”, 「民事判例研究」 XIV).

II. 美國 ADR의 一般的 概觀

1. ADR의 概念과 發展²⁾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분쟁이 사법적 쟁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으나, 사실 사법적 해결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사건 수의 폭발적 증가 역시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도 업무 과중이라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³⁾

실제 미국에서의 ADR 운동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사법제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관한 토의가 있었던 Pound Conference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버거(Burger) 대법원장은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법학자들 및 변호사들에게 점증하는 사법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의 모색을 촉구하였고, 이후 새로운 ADR 절차들이 실험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절차들이 정착되었다.⁵⁾

즉, 법원은 분쟁해결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 및 변호인들이 사법적 판단이전에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변호사들 또한 당사자들에게 ADR 절차를 포함하여 분쟁의 신속, 경제적 해결에 적합한 비쟁송적 절차를 권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 각 대학에서도 ADR에 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⁶⁾

2) 이규진, “美國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2000.여름, pp.26-27.

3) Joseph T. McLaughl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Feb 25, 1993.

4) 正式名稱은 “The Pound Conference on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인바, ABA(American Bar Association),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S., the Conference of State Chief justices 등에 의하여 後援된 會議로서, 1976. 4. 미네소타주 세인트폴(St. Paul)에서 開催되었다;(A. Leo Levin and Russel Wheeler, “THE POUND CONFERENCE : Perspective on Justice in the Future,” 1979).

5) 美國에서의 ADR 發展에 관한 仔細한 說明은, A. Leo Levin and Russel Wheeler, “THE POUND CONFERENCE : Perspective on Justice in the Future,” 1979 參照.

6) “Colorado Adopts Ethics Rule,”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CPR), Vol.10, No.5, May 1992, p.70.

따라서 ADR은 첫째,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⁷⁾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둘째, 재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셋째,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⁸⁾⁹⁾

2. ADR에 대한 國際的 論議

ADR을 이용한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현재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9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¹⁰⁾」을 제정했는데, 제6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ADR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ADR에 의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내부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논의하면서 온라인(OnLine)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의 전개를 촉진하는 정책선언¹¹⁾을 했으며, 글로벌

7) 紛爭은 潛在的 紛爭과 顯在的 紛爭으로 區別하기도 한다;(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 Practical Strategy for resolving Conflict」, 1986).

8)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pp.425-426.

9) 이러한 概念에 基礎한 ADR의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R節次는 創造的 解決方案의 導出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종종 이러한 創造的 解決方案은 當事者들 스스로 創案해 내는 境遇가 많다. 둘째, ADR節次는 融通性이 많고 彈力的으로 運用됨으로써 司法的 爭訟節次보다 더 迅速, 低廉, 便利한 解決을 圖謀한다. 즉, Discovery(證據調查節次를 말하며 證據調查節次에는, 證言記錄節次인 Deposition, 再面에 의한 質問節次인 Interrogatories, 文書提出, 出入要請 등의 節次가 있다) 등의 複雜하고 費用이 많이 드는 節次를 省略하거나 簡略하게 하는 한편 辯護士 選任 費用의 負擔도 輕減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ADR節次는 非公開가 原則이다. 이는 當事者들의 合意 結果가 個人의 名譽나 會社의 財政狀態 등에 좋지 않은 影響을 줄 수 있음을 考慮할 때 매우 重要한 要素라고 할 수 있다. 넷째, ADR節次는 當事者들로 하여금 그 進行에 直接 主導的으로 參與하고 合意案을 導出함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 節次에 參與한 當事者들은 그 結果의 執行에 매우 積極的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ADR節次는 持續的인 關係를 維持하는 當事者들 사이에 매우 有用한 制度이다. 그들에게는 在來의 對立的인 "win/lose" 解決方案보다 相互合意下에 導出하는 "win/win" 合意案이 앞으로의 關係에 훨씬 有益할 것이기 때문이다;(Eric D. Green, "The CPR Legal Program MiniTrial Handbook," Corporate Dispute Management 1982, at MH-21.)

10) <http://www.cpb.or.kr/sobi/report/fulltext/991210.html>

11) <http://dsa-isis.jrc.it/ADR>

비즈니스 다이얼로그(Global Business Dialogue)¹²⁾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이 만들어져 ADR에 의한 상거래 분쟁해결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

3. 美國 ADR節次들¹³⁾

미국 ADR절차는 크게 둘로 나누어, 사적인 협상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입안한 규칙이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사적 ADR과 법원의 쟁송절차와 관련된 절차에 의하는 법원 연계(court-annexed) ADR로 대별할 수 있고, 또한 기속력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에 따르지 않고 몇 가지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⁴⁾

1) 協商(Negotiation)

모든 ADR절차에서 당사자들은 '협상'에 의하여 절차에 참여하고 각자의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며 해결의 방법이나 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¹⁵⁾ 협상의 중요성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기본적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역할 외에 상기하여야 할 것은, '협상'도 체계적인 분쟁해결의 한 절차로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단순히 당사자간의 비공식적인 논의 또는 다른 ADR절차에서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교섭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독립적인 ADR절차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절차는 당사자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positional bargaining과 interest-based bargaining으로 나눌 수 있고,¹⁶⁾ 협상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이익(interest)

12) <http://www.gbde.org>

13) 이규진, "美國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前掲論文, pp.28-34의 內用을 一部 要約·再整理 하였음을 미리 밝혀둠.

14) 가장 많이 사용되는 節次는 調停(mediation)과 仲裁(arbitration)라고 할 수 있다;(James R. Holbrook and Laura M. Gray, "Court-Annexed ADR," Journal of Contemporary Law, 1995).

15) Christopher W. Moore, op.cit.

16) Positional bargaining은 協商의 當事者가 認可자 하는 目標가 制限되어 있고 오로지 配分의 解決方法(distributive solution), 즉 各 當事者에게 得과 失을 按分하는 方法만이 唯一

은 실체적(substantive)¹⁷⁾, 절차적(procedural)¹⁸⁾, 심리적(psychological)¹⁹⁾ 이익으로 각 분류할 수 있다.²⁰⁾

2) 調停(Mediation)

미국에서의 조정은 1970년대 및 1980년대를 통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정절차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으로 조정전치(調停前置)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협상절차의 연장이자 발전된 형태인 ‘조정’은 중립적 지위의 제3자인 조정자(mediator)가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로서,²¹⁾ 지속적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상거래, 가족관계, 임대차관계, 근린관계, 노사관계, 건축허가 관련분쟁 등 다수 당사자들 사이의 비금전적 분쟁에 특히 그 효용을 나타내고, 불법행위에 의한 금전배상 사건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된다.

또한 조정절차에는 당사자들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자의 개입²²⁾이 필수적인 바, 조정자의 특색으로는 당사자들이 용인²³⁾할 수 있고, 공정하며, 중립적인²⁴⁾ 제3자로서 결정권한(authoritative

한 解決策이라고 認知하는 境遇의 交渉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interest-based bargaining은 可能的한 兩 當事者의 많은 欲求를 充足시켜 주는 統合的 解決方法(integrative solution)을 追求하는 境遇의 交渉方法으로서, 다툼의 對象이 된 金錢이나 時間, 義務履行의 태양 등을 制限的으로 把握하지 않고 여러 가지 角度로 보면서 協商을 하는 것이다;(Roger Fisher and William Ury, GETTING TO YES :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1981).

17) “實體의 利益”이란 金錢이나 時間과 같은 特定의 對象에 관한 것을 말한다.

18) “節次的 利益”이란 協商의 當事者가 論議의 過程 및 合意案의 執行 方法 등에 관하여 選好하는 型式에 관한 것으로서, 예컨대 發言機會의 附與 程度, 協商의 時間 및 場所의 選擇, 合意案의 作成 主體 등에 관한 事項을 말한다.

19) “心理的 利益”은 協商過程 및 合意案 導出 以後의 當事者들 사이의 關係에 대한 感情的 問題들을 말한다.

20) Christopher W. Moore, op.cit.

21) Dwight Golann, 「Mediating Legal Disputes : Effective Strategy for Lawyers and Mediators」, 1996.

22) 調停者의 介入이란 當事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關係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當事者들 以外에 獨立의 位置의 第3者가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紛爭解決의 매우 重要한 要因이 될 수 있다;(Rubin, J.·Brown, B,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1975).

23) 當事者들의 調停者에 대한 容認이라는 것은 調停者의 協力を 當事者들이 받아들인다는 意味로서 調停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물론, 當事者들이 調停者의 意見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decision-making power)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

통상 조정은 개시절차, 개별 회합, 조정의 3단계로 나뉘어 지는바, 각 단계별로 조정의 기본원칙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의 개시 전에, 조정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규 발생을 막기 위하여 조정의 기본규칙들에 관한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것이 좋다. 둘째, 조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협상이 반드시 당사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상에 그 근간이 있고, 조정자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상절차의 전문성으로 당사자들이 교섭단계에서 상호 의견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정자는 직접조사나 문서의 열람, 진술의 청취 등 자료수집을 위한 절차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는 재정기록, 회합일지, 단체나 기관의 내부 공식문서 및 기안문서 등이 있는 바, 조정자가 사건의 실제적 내용에 관하여 많은 파악을 할수록 당사자들을 돕는 것이 용이해진다. 넷째, 화해조항의 평가이다. 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상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차선책을 결정하여 제시하도록 돕는 것이다.²⁶⁾ 조정자는 당사자들과 함께 조정이 아닌 여타의 다른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여 나올 수 있는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차선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종종 이러한 차선책에 대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당사자들을 협상의 종료 대신 새로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도 한다.²⁷⁾ 다섯째,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조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 조정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합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장래의 특정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종료시키는 것, 강제력이 없는 다른

參酌한다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이다.

24) 公正성과 中立性은 調停節次의 가장 重要한 要所로서, 公正性은 當事者들 사이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調停者의 態度를 말하는 반면, 中立性은 調停者와 當事者들 사이의 關係에서 調停者가 不公正으로 인한 反對給付를 원하지 않는다는 調停者의 態度를 말한다.

25) Christopher W. Moore, op.cit.

26)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BATNA"), Roger Fisher and William Ury, op.cit.

27) Christopher W. Moore, op.cit.

ADR 절차의 적용을 권유하는 것,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그 사건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쟁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있다.²⁸⁾ 여섯째, 장래의 소송절차에 관한 합의 도출이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시작하기는 하되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관한 합의 또는 세부논점에 관한 합의를 유도해내는 것이 좋다. 예컨대 증거조사절차(discovery)에 있어서의 사전합의, 개별적 중요사항에 관한 논점정리 등의 상호합의가 그것이다.

3) 簡易審理(Mini-Trial)

간이심리 절차는 재판이 아닌 화해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간의 상사 분쟁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절차는 사법쟁송적 성격 및 조정, 중재적 성격을 혼합한 화해절차로서,²⁹⁾ 다음과 같은 면에서 조정절차와 매우 다르다. 첫째, 당사자들은 절차의 형식 자체를 협의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둘째, 간이화된 재판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셋째, 비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절차의 주재자 내지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절차는 소송 이전 또는 소송 계속 중 어느 때라도 개시가 가능한데, 간이심리 기일에 쌍방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중립적 제3자와 화해의 전권을 부여받은 양측의 고위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앞에서 요약된 변론을 하고, 그 심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양측의 고위 법원들은 합의안 도출을 다시 시도하게 되며, 이에 실패하면 중립적 제3자에게 그 분쟁이 사법적 쟁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예상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³⁰⁾

4) 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이 다투어지는 논점에 관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력을 원하는 자발적 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중재인의 결론은 권고적일 수도 또는 기속적일 수도 있으나, 원래 중재란 기속적 ADR의

28) Dwight Golann, op.cit.

29) Eric D. Green, "Mini-Tri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CPR Legal Program Mini-Trial Handbook, Corporate Dispute management」, 1982, at MH-14.

30) Goldberg, Sander, Rogers, "Dispute Resolution," 「Aspen Law & Business」.

전형적 형태이다. 합의약정에 의한 사적인 중재는 물론 법원과 연계된 중재 모두 1인의 중재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고 합의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분쟁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¹⁾ 또한 당사자들은 종종 사법적, 소송절차보다 덜 형식적이고 비공개적이며 신속, 저렴하다는 면에서 중재절차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중재자 또는 중재협의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판정자가 제3의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보다 결정에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재를 규율하는 연방법으로 The U.S. Arbitration Act(Title 9, U. S. C.)이 있다.³²⁾

5) 옴부즈만 制度(Ombudsman Program)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유래되었는데, 위 국가들에서 행정집행력의 남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민의 청원을 듣고 독립적·사실조사권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의 옴부즈만 제도는 ADR의 한 형태로 발전되었다.³³⁾ 이 제도의 목적은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부 회사들은 이 옴부즈만 제도를 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간의 의견불일치가 쟁의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개발하여 왔으나,³⁴⁾ 옴부즈만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는 조정적 개입자로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31) 仲裁를 원하는 사람들은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The Center for Public Resources("CPR") 또는 The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FMCS") 등에 ADR을 申請할 수 있다.

32) 이규진, "美國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前揭論文, p.32.

33) Goldberg, Sander, Rogers, "Dispute Resolution," ibid.

34) Reed, "Control Data Corporation's Ombudsman," IV A.1, CPR Dispute Management, 1980.

Ⅲ. 美國 聯邦海事委員會의 ADR 最終 規則 分析

해사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는 영국과 미국³⁵⁾ 등 해운선진국에서 발달해온 해상중재제도가 뿌리를 내렸고, 이들 국가 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해운국들은 해상중재를 담당하는 해상중재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해상중재제도를 확립하였다. 특히 영국과 중국, 일본 등은 1995-96년에 자국의 중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별도의 중재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재법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 해상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해상중재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 등이 낮아 중재의뢰 건수가 적고, 국내중재에 편중되고 있어서 국제해사중재제도가 전문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해상중재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해상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연방해사위원회의 ADR 최종 규칙을 분석토록 하겠다.

1. 美國 海事仲裁機關

미국 해상중재의 특색은 대부분이 상설중재 기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로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사중재원을 통한 기관중재(institution arbitration)의 예가 흔치 않다. 임의중재에 의한 해상중재의 사건 관리업무는 통상적으로 제3의 중재인인 의장이 하고, 상설해사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뉴욕에 해상중재인협회(SMA : Society of Maritime Arbitration)가 있지

35) 美國의 私法制度가 聯邦과 州로 二元化되어 있는 것처럼 仲裁에 관한 美國의 法으로 聯邦과 州次元의 두 種類로 分類된다. 聯邦仲裁法과 1958년 뉴욕協約이 前者에 該當되며, 1925年 聯邦仲裁法을 모델로 各州들이 制定·施行하고 있는 仲裁法規들이 後者에 該當된다. 聯邦仲裁法은 1925년에 처음 制定되어 1990년에 最終 改正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改正되었으며, 뉴욕주 民事訴訟法에는 第7501條에서 第7541條에 걸쳐 仲裁規定이 明記되어 있다. FAA는 1925년에 걸쳐 仲裁規定이 明示되어 있다. FAA는 1925년에 制定되었는데 여러 차례의 改正을 거쳤으며, 現在로서는 1990년의 改正法律이 가장 最近의 것이다.(김갑유, “美國 聯邦仲裁法에 관한 紹介”,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96年 봄號).

만, 이 기관은 해상중재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상중재인들이 조직한 법인이다.

해상중재기관은 아니지만 상설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해상중재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사건 수는 극히 적다. 해상중재가 AAA의 관리하에 행하여질 경우, 중재인을 중재인명부 중에서 AAA가 선정한다. AAA는 그 본부를 뉴욕시에 두고, 미국 전역에 걸쳐 20개 이상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회는 상사, 건설, 곡물, 특허, 부동산 평가, 섬유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재에 적용될 다양한 중재규칙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충적으로 적용될 국제중재규칙도 제정·시행하고 있다.³⁶⁾

2. 美國 海事仲裁節次

연방중재법 역시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기고 있다. 해상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사중재는 특정한 거래기관의 규칙이나 미국중재협회(AAA)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 특히 일반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전형계약상의 중재조항에서 중재인은 “상공인(commercial men)”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자신은 유조선 용선계약에서만 중재인이 될 수 있으나, 계약형태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선임하는 중재인은 상공인으로 하고, 중립중재인은 해상변호사로 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인이 되는 “상공인”들은 주로 해운회사나 대리점, 선박용선곡물회사, 정유회사나 용선중개회사의 임원들이다. 한편, 해상분쟁의 경우에는 SMA의 규칙이 적용된다.

뉴욕의 해상중재는 매우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구당사자의 대리인은 청구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인을 선임한 후 상대방에게 선임사실을 통지하면서 두번째 중재인을 선임을 요구한다. 두번째 중재인이 선임되면 이들이 세번째 중재인을 선임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변론 이전에 화해로 해결되는데, 화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구인측 대리인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편리하도록 변론 기일을 정한다. SMA규칙 제33조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재인 전원의 서명을 요건으로

36) 최동현, “海事仲裁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2001年 가을號, p.29.

하고 있다. 뉴욕해사중재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고 있다.³⁷⁾

3. 美國 聯邦海事委員會의 ADR 最終 規則

1) 聯邦海事委員會

미국에 있어 해사에 관한 행정기관으로는 총합적 운수행정을 목적으로 1967년에 발족한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OT)³⁸⁾와 운수보조를 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상무성 해사국(Maritime Administration : MARAD)³⁹⁾, 독점금지법을 배경으로 해운 특히 해운동맹을 규제감독한 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⁴⁰⁾ 등이 있다.

이중 연방해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미주 운항관련 선사간 협정의 검토 및 실시 둘째, 미주 운항선사의 태리프(tariff) 신고, 접수 및 검토 셋째, 화주 및 선사의 권익보호 넷째, 3국간 항로에서 미국선사 보호 다섯째, 해상화물운송주선인 면허 발급 여섯째, 여객선 증명서 발급 일곱째, 해운관련업자 부정행위 조사 여덟째, 해운관련법규의 시행세칙 제정 및 시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는 첫째, 일반운송인(common carrier) 둘째, 원양선사(ocean common carrier) 셋째, 무선박운송인(NVOCC) 넷째,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다섯째, 해상화물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rwarder) 여섯째, 국영선사(controlled carrier) 일곱째, 항만업자(marine terminal operator) 여덟째, 화주(shipper) 아홉째,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 등이 있다.

37) 최동현, “海事仲裁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上揭論文, pp.29-30.

38) 運送需要의 顯著한 擴大 多樣化를 背景으로 從來 여러 行政機關에 의하여 行하여 온 運輸 行政을 單一의 行政機關에 集結하여 總合的 統一의 行하려는 觀點에서 1967年 4月에 創設되었다.

39) 1951년에 FMC의 前身인 聯邦海事局(FMB)과 같이 創立되어 FMB의 補助機關으로서 豫算의 立案, 長期海運計劃의 提出, 補助코스트의 算定 등을 하였으나 1961年の 改編으로 그 地位가 格上되어 그때까지 FMC와 半交錯되어 있던 管轄範圍가 整理되어 美國海運造成의 中心的 機關이 되었다.

40) 聯邦海事委員會는 1916年の 美合衆國海運委員會(U.S.Shipping Board)에서 1933年の 商務部海運局(Shipping Bureau of Commerce Department)으로 이어 1936年の 美合衆國海事委員會(U.S.Maritime Commission)에서 1951年の 聯邦海事局(Federal Maritime Board)로, 이어 1961年の 聯邦海事委員會(Federal Maritime Commission)로 變遷해 왔다.

<그림 III-1> 聯邦海事委員會(FMC)의 機構

<FEDERAL MARITIME COMMISSION ORGANIZATION CHART>					
COMMISSIONER	COMMISSIONER	CHAIRMAN		COMMISSIONER	COMMISSIONER
		▼			
▽	▽	▽	▽	▽	▽
OFFICE OF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		▽		▽	▽
BUREAU OF TARIFFS, CERTIFICATION AND LICENSING		BUREAU OF ADMINISTRATION		BUREAU OF ECONOMICS & AGREEMENT ANALYSIS	BUREAU OF ENFORCEMENT
					▼
					AREA REPRESENTATIVES North Atlantic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Seattle

資料 : FMC.

실제 연방해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준 사법기관으로 사법적 절차를 채용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해사위원회의 기구로는 사무실(OFFICE OF THE SECRETARY), 법무행정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법률상담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기획조종실(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등 6개의 실과 총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등 4개의 국이 있다. 1998년 현재 직원수는 150여명, 예산은 1,400만 달러/년 정도이며, 본부는 워싱턴(Washington DC)에 있다. 지사는 로스엔젤스(Los Angeles), 시애틀(Seattle), 마이애미(Miami), 뉴올리언즈(New Orleans)에 있으며, 연방해사위원회의 기구표는 <그림 III-1>과 같다.

2) 聯邦海事委員會의 ADR 最終 規則 分析

연방해사위원회의 대체적 분쟁 해결법(ADRA :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은 1990에 처음 공포되었으며⁴¹⁾ 이어 1996년에 수정됐다⁴²⁾. 연방해사위원회의 ADR 정의에 따르면 ADR은 화해, 촉진, 조정, 진상조사, 간이심리, 중재, 음부즈의 사용, 혹은 논쟁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연방해사위원회에서는 이용 가능한 ADR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했고 실제 위원회의 규칙 Part 502를 수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2001년 5월 최종 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2001년 5월에 발표된 최종 규칙들의 구성을 보면 <表 III-1>과 같다.

<表 III-1> 聯邦海事委員會의 ADR 構成

條 項	構 成
502.401	Policy(정책)
502.402	Definitions(정의)
502.403	General authority(일반적 권한)
502.404	Neutrals(중립인)
502.405	Confidentiality(기밀성)
502.406	Arbitration(중재)
502.407	Authority of the arbitrator(중재인의 권한)
502.408	Conduct of arbitration proceedings(중재 진행의 수행)
502.409	Arbitration awards(중재 판정)
502.410	Representation of parties(당사자의 대표)
502.411	Mediation and other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의 조정과 다른 대체적 수단)

41) Public Law No.101-552.

42) Public Law No.104-320.

(1) 定策⁴³⁾

법과 대리인의 임무와 정보가 완전히 양립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분쟁 결정의 대체적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연방해사위원회의 정책이다. 위원회는 적용될 수 있는 분쟁, 공식적 비공식적 판결, 규정, 강화, 일치의 발행, 면허와 허가의 발행과 취소, 계약판정과 관리, 위원회에 야기된 소송, 공적이고 규정된 위원회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모두 분야에서 ADR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관리들에게 대립결정 기술, ADR의 관습과 이론의 지식 그리고 ADR의 적절한 이용을 사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본 part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는 초기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의 다양한 범위의 사용을 고려함이 요구된다. 당사자는 위원회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대신에 소비자 고발 및 면허국(Commission's Bureau of Consumer Complaints and Licensing)을 통해 대체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촉구 받으며, 또한 위원회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원과 사람 역시 분쟁결정에 대한 협력적, 동의적 접근에 대한 기회를 확인하도록 촉구 받는다.

43) **502.401 Policy** : It is the policy of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to use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to the fullest extent compatible with the law and the agency's mission and resources. The Commission will consider using ADR in all areas including workplace issues, formal and informal adjudication, issuance of regulations, enforcement and compliance, issuing and revoking licenses and permits, contract award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brought by or against the Commission, and other interactions with the public and the regulated community. The Commission will provide lear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its employees to develop their ability to use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still knowledge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ADR, and to facilitate appropriate use of ADR. To this end, all parties to matters under this part are required to consider use of a wide range of alternative means to resolve disputes at an early stage. Parties are encouraged to pursue use of alternative means through the Commission's Bureau of Consumer Complaints and Licensing in lieu of or prior to initiating a Commission proceeding. All employees and persons who interact with the Commission are encouraged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consensual approaches to dispute resolution or rulemaking;(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2) 定義⁴⁴⁾

첫째,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은 어디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대립, 촉진, 조정, 진상조사, 간이심리, ombuds의 사용 혹은 그들과 결합된 어떤 것을 포함한 논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절차를 의미한다. 둘째, 판정은 논쟁의 쟁점을 해결하고 중재인에 의한 결정이다. 셋째, 분쟁 해결 의사소통은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서면합의는 제외한다. 또한 참석한 중재인, 당사자, 비당사자의 각서, 통지 혹은 산물을 포함하며, 분쟁해결절차의 결과로서 도달한 최종서면 합의 혹은 중재 판정은 분쟁해결 의사소통이 아니다. 넷째, 분쟁해결절차는 중립인이 지명되고 명시된 당사자에 대한 논쟁에서 쟁점을 해결하던 분쟁결정의 대안적 수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기밀성은 정보에 관해서 그리고 그 정보가 제공되어지는데 폭로되지 않은 자료(source)의 명시된 의도와 정보는 폭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source)를 대신한 합리적 기대를 제공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섯째, 논쟁에 대한 쟁점은 위원회의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의 두가

44) **502.402 Definitions** : (a)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means any procedure that is used to resolve issues in controvers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ciliation, facilitation, mediation, factfinding, minitrials, arbitration, and use of ombuds, or any combination thereof ; (b) Award means any decision by an arbitrator resolving the issues in controversy ; (c)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means any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 prepared for the purposes of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ncluding any memoranda, notes or work product of the neutral, parties or nonparty participant ; except that a written agreement to enter into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or final written agreement or arbitral award reached as a result of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s not a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 (d)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means any process in which an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used to resolve an issue in controversy in which a neutral is appointed and specified parties participate ; (e) In confidence means, with respect to information, that the information is provided - (1) With the expressed intent of the source that it not be disclosed ; or (2) Under circumstances that would create the reasonable expectation on behalf of the source that the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 (f) Issue in controversy means an issue which is material to a decision concerning a program of the Commission, and with which there is disagreement - (1) Between the Commission and persons who would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decision ; or (2) Between persons who would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decision ; (g) Neutral means an individual who, with respect to an issue in controversy, functions specifically to aid the parties in resolving the controversy ; and (h) Pers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5 U.S.C. 551(2);(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지 위원회와 결정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사이와 결정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사이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중립인은 논쟁의 쟁점에 관하여 논쟁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특별하게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여덟째, 5 U.S.C. 551(2)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一般的 權限⁴⁵⁾

첫째, 위원회는 만약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에 동의한다면 논쟁의 쟁점 결정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함을 고려하려 한다. 둘째, 만약 다음과 같을 때 위원회는 분쟁해결절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제의 명확한 혹은 권위 있는 결정이 전례의 가치가 요구된다면 그러한 처리는 권위 있는 전례로서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지지 않을 경우이다. (2)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정부정책의 상당한 의문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대리인에 대한 추천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제공되어지지 않을 경우이다. (3) 기존 정책의 유지가 특별히 중요하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결정사이의 다양성은 증가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개인의 결정사이에 일관된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경우이다. (4) 문제는 절차

45) **502.403 General authority** : (a) The Commission intends to consider using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for the resolution of an issue in controversy, if the parties agree to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b) The Commission will consider not using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f - (1) A definitive or authoritative resolution of the matter is required for precedential value, and such a proceeding is not likely to be accepted generally as an authoritative precedent ; (2) The matter involves or may bear upon significant questions of Government policy that require additional procedures before a final resolution may be made, and such a proceeding would not likely serve to develop a recommended policy for the agency ; (3) Maintaining established policies is of special importance, so that variations among individual decisions are not increased and such a proceeding would not likely reach consistent results among individual decisions ; (4) The matter significantly affects persons or organizations who are not parties to the proceeding ; (5) A full public record of the proceeding is important, and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cannot provide such a record ; and (6) The Commission must maintain continuing jurisdiction over the matter with authority to alter the disposition of the matter in the light of changed circumstances, and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would interfere with the Commission's fulfilling that requirement. (c)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uthorized under this subpart are voluntary procedures which supplement rather than limit other available agency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개인에게 상당하게 영향을 줄 경우이다. (5)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 결정 처리가 그러한 기록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경우이다. (6) 위원회는 변화된 상황으로서 문제의 처분을 바꾸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분쟁해결절차시 위원회가 그러한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셋째, 본 subpart 하에 명시되어 있는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은 다른 이용 가능한 대리인 분쟁해결기술을 제한하기 보다는 보충하는 자발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4) 中立人⁴⁶⁾

첫째, 중립인은 영구적 혹은 임시적 관리 혹은 연방정부의 직원 혹은 분쟁결정절차에 대해 당사자들이 수락한 개인을 말한다. 중립인은 논쟁의 쟁점에 관해서 공식적, 제정적, 개인적 대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이해가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폭로가 되거나 모든 당사자가 중립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둘째, 중재인은 조정자, 촉진자 혹은 조정자로서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역할을 한다. 셋째, 당사자의 동의로 연방해사위원회 분쟁 해결 전문가들은 위원회 직원, 다른 대리인과의 약정 혹은 계약적인 기준을 통해서 분쟁해결절차에서 중립자에게 중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모색한다. 넷째, 수수료 문제이다. 만약 당사자가 위원회의 관리를 제외한 중립자를 선택하면 수수료와 비용은 당사자의 동의로서 당사자에 의해 부담될 것이다.

(5) 機密性⁴⁷⁾

46) **502.404 Neutrals** : (a) A neutral may be a permanent or temporary officer or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any other individual who is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A neutral shall have no official, financial, or personal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issues in controversy, unless such interest is fully disclosed in writing to all parties and all parties agree that the neutral may serve. (b) A neutral who serves as a conciliator, facilitator, or mediator serves at the will of the parties. (c) With consent of the parties,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will seek to provide a neutral in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hrough Commission staff, arrangements with other agencies, or on a contractual basis. (d) Fees. Should the parties choose a neutral other than an official or employee of the Commission, fees and expenses shall be bore by the parties as the parties shall agree;(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 47) **502.405 Confidentiality** :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d) and (e), a neutral in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shall not voluntarily disclose or through discovery or compulsory process be required to disclose any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or any communication provided in confidence to the neutral, unless- (1) All parties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and the neutral consent in writing, and if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was provided by a nonparty participant, that participant also consents in writing ; (2)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has already been made public ; (3)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is required by statute to be made public, but a neutral should make such communication public only if no other person is reasonably available to disclose the communication ; or (4) A court determines that such testimony or disclosure is necessary to - (i) Prevent a manifest injustice ; (ii) Help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 or (iii) Prevent harm to the public health or safety, of sufficient magnitude in the particular case to outweigh the integrity of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in general by reducing the confidence of parties in future cases that their communications will remain confidential. (b) A party to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shall not voluntarily disclose or through discovery or compulsory process be required to disclose any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unless - (1) The communication was prepared by the party seeking disclosure ; (2) All parties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consent in writing ; (3)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has already been made public ; (4)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is required by statute to be made public ; (5) A court determines that such testimony or disclosure is necessary to - (i) Prevent a manifest injustice ; (ii) Help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 or (iii) Prevent harm to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of sufficient magnitude in the particular case to outweigh the integrity of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in general by reducing the confidence of parties in future cases that their communications will remain confidential ; (6)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is relevant to determining the existence or meaning of an agreement or award that resulted from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or to the enforcement of such an agreement or award ; or (7) Except for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s generated by the neutral, th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was provided to or was available to all parties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c) Any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that is disclosed in violation of paragraphs (a) or (b) of this section shall not be admissible in any proceeding relating to the issues in controversy with respect to which the communication was made. (d) (1) The parties may agree between or amongst themselves to alternative confidential procedures for disclosures by a neutral, and shall inform the neutral before commencement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of any modifications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at will govern the confidentiality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on confidentiality in federal proceedings published by the Interagency ADR Working Group and adopted by the ADR Council(<http://www.financenet.gov/financenet/fed/iadrwg/confid.pdf>). If the parties do not so inform the neutral,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apply. (2) To qualify for the exemption under paragraph (j) of this section, an alternative confidential procedure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provide for less disclosure than the confidential procedures

첫째, 아래 넷째와 다섯째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중립자는 자발적으로 폭로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조사절차와 의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분쟁해결의사소통 혹은 중립자에게 기밀로 제공되는 어떤 의사소통의 폭로도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1)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당사자와 서면 합의한 중립인 그리고 분쟁해결의사소통에 참석한 비당사자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 참석자 또한 서면 합의한 참석자여야 한다. (2) 분쟁해결의사소통은 공적이어야 한다. (3) 분쟁해결의사소통은 공표된 법령에 의해서 요구되어진다. 단지 만약 의사소통이 폭로되어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아무도 공표하지 않는다면, 중립자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공공연히 해야 한다. (4) 법원에서는 그러한 증언 혹은 폭로가 필요하다. 이는 ① 명백한 불법을 막 으며, ② 기존의 법 위반(violation of law)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③ 그들의 대화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미래의 경우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자신감·떨어뜨림으로서 분쟁해결절차의 완벽함보다도 더 중요한 특정경우에 아주 중요한 대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의 한 당사

otherwise provided under this section. (e) If a demand for disclosure, by way of discovery request or other legal process, is made upon a neutral regarding a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the neutral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notify the parties and any affected nonparty participants of the demand. Any party or affected nonparty participant who receives such notice and within 15 calendar days does not offer to defend a refusal of the neutral to disclose the requested information shall have waived any objection to such disclosure. (f)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the discovery or admissibility of any evidence that is otherwise discoverable, merely because the evidence was presented in the course of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g)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shall have no effect on the information and data that are necessary to document an agreement reached or order issued pursuant to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h)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shall not prevent the gathering of information for research or educational purposes, in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governmental entities, or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o long as the parties and the specific issues in controversy are not identifiable. (i) Paragraphs (a) and (b) of this section shall not prevent use of a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to resolve a dispute between the neutral in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and a party to or participant in such proceeding, so long as such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is disclos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resolve such dispute. (j) A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which is between a neutral and a party and which may not be disclosed under this section shall also be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5 U.S.C. 552(b)(3);(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자는 자발적으로 어떠한 분쟁해결 대화든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증거조사 절차와 의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표 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음이 아니라면 말이다. (1) 그 대화가 공표를 추구하는 해당 당사자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다면, (2)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당사자가 서문에 동의한다면, (3) 그 분쟁해결의 대화가 이미 공표되었다면, (4) 그 분쟁해결의 대화가 법에 의해 공표하도록 요구된다면, (5) 법정에서는 그러한 선언과 공표가 다음을 위해 필요하다. ① 명백한 불공정을 막기 위해, ② 법의 어김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③ 그들의 대화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미래의 경우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림으로서 분쟁해결 절차의 완벽함보다도 더 중요한 특정경우에서 아주 중요한 대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 분쟁해결대화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판정과 합의안의 취지와 존재를 결정하는데에 관련되어 있고 또는 그러한 어떤 합의안이나 또는 판정문의 강화에 관련된다면 또는 (7) 중립자에 의해 만들어진 분쟁해결 대화들을 제외하면 분쟁해결대화는 분쟁해결 대화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거나 이용가능 할 것이다. 셋째, 이 부분의 문단 첫째와 둘째를 어긴 경우에 공표되는 어떤 분쟁해결대화든지 그 대화가 이루어졌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논쟁의 어떠한 문제들에 관련된 어떤 절차에서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1) 당사자들은 중립자에 의한 공표에 대해서 대체적인 비밀절차에 그들끼리 동의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시작 전에 중립자에게 이 부분의 문단 첫번째의 규정들에 대한 수정본도 알려줄 것이다. 이 부분이라 함은 분쟁해결절차의 기밀성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Interagency ADR Working Group에 의해서 공표되고 ADR 위원회⁴⁸⁾에 의해 채택된 연방절차에 대한 기밀성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어떤 당사자든지 그 중립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의 문단 첫 번째 역시 적용될 것이다. (2) 이 부분이 문단 열번째하에서 면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 subpart 하에서 대체적인 비밀절차가 이 부분하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그 비밀 절차들보다 적게 공표될 것이다. 다섯째, 증거조사절차의 요구나 다른 법적 절차의 방법에 의한 공표의 요구가 중립자에게 분쟁해결대화에 관해서 이루어진다면 중립자는 그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그 요구를 하는 영향을 받는 비 당사자들에게 알

48) <http://www.financenet./fed/idadrwg/confid.pdf>.

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한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요구한 정보의 공표를 꺼려하는 중립자를 변호하지 않는 어떤 당사자나 영향을 받는 비당사자들은 그러한 공표에 대해서 반대를 자제할 것이다. 여섯째,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것도 다른 상황에서 발견 가능한 어떤 증거의 발견물과 허용을 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제시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 부분의 문단 첫번째와 두번째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추구되는 절차나 합의된 사항을 서류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와 자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여덟째, 당사자나 논쟁에서의 특정 문제가 확인가능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문단 첫번째와 두번째는 다른 대리인, 정부기관 그리고 분쟁해결프로그램과 협동하여 연구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홉째, 그러한 분쟁해결대화가 단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에 필수적인 정도로 공표되지만 하면 이 부분의 문단 첫번째와 두번째는 어떤 분쟁해결절차와 그러한 절차에 참가자 또는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대화의 사용을 막을 것이다. 열번째 중립자와 당사자사이에 있고 이 부분하에서 공표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분쟁해결대화는 5 U.S.C. 552(b)(3)하에서는 공표되지 않을 것이다.

(6) 仲裁⁴⁹⁾

- 49) **502.406 Arbitration** : (a) (1) Arbitration may be us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whenever all parties consent, except that arbitration may not be used when the Commission or one of its components is a party. Consent may be obtained either before or after an issue in controversy has arisen. A party may agree to -- (i) Submit only certain issues in controversy to arbitration ; or (ii) Arbitra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award must be within a range of possible outcomes. (2) The arbitration agreement that sets forth the subject matter submitted to the arbitrator shall be in writing. Each such arbitration agreement shall specify a maximum award that may be issued by the arbitrator and may specify other conditions limiting the range of possible outcomes. (b) With the concurrence of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binding arbitration may be used to resolve any and all disputes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a Commission administrative proceeding before an Administrative Law Judge.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may withhold such concurrence after considering the factors specified in 502.403, should the Commission's General Counsel object to use of binding arbitration. (c)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will appoint an arbitrator of the parties' choosing for an arbitration proceeding. (2) A Commission officer or employee selected as an arbitrator by the parties and appointed

첫째, 중재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마다 분쟁해결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지 모른다. 위원회나 그것의 구성요소가 당사자일 때 사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동의는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든지 후이든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할 것이다. ① 단지 분쟁의 어떤 문제를 중재에 맡긴다. 또는 ② 판정이 가능한 결과의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중재. 그리고 목적물이 중재인에게 제출된다는 진술의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각의 그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인에게서 발행되어지고 가능한 결과의 범위내에서 다른 제한적 조건을 명시하는 최대판정을 명시할 것이다. 둘째, 연방해사위원회 분쟁 해결 전문가의 합의로 구속적 중재는 행정부 판사에 상정되기 전에 위원회의 행정적 진행의 주제로 가능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만약 위원회의 일반 고문변호사가 구속적 중재의 사용에 반대한다면 연방해사위원회 분쟁 해결 전문가는 502.403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한 후에 그러한 합의를 거절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에 의해 중재자로서 선택되고 연방해사위원회 분쟁 해결 전문가에 의해서 지명된 위원회 관리는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적 중재를 통해 논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중재인에 의한 결정은 행정부 판사나 혹은 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관해 전례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행정부 판사는 1등 행정부 판사의 합의로 중재인으로써 지정된다. 넷째, 중재인은 5 U.S.C. 573의 기준에 충족하는 중립인이 된다.

(7) 仲裁人의 權限⁵⁰⁾

by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shall have authority to settle an issue in controversy through binding arbitration pursuant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 provided, however, that decisions by arbitrators shall not have precedential value with respect to decisions by Administrative Law Judges or the Commission. Administrative Law Judges may be appointed as arbitrators with the concurren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d) The arbitrator shall be a neutral who meets the criteria of 5 U.S.C. 573;(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 50) **502.407 Authority of the arbitrator** : An arbitrator to whom a dispute is referred may - (a) Regulate the course of and conduct arbitral hearings ; (b) Administer oaths and affirmations ; (c) Compel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production of evidence at the hearing under the provisions of 9 U.S.C. 7 only to the extent the Commission i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to do so ; and (d) Make awards;(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분쟁에서의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첫째, 중재 청문회의 수행과 과정을 조정한다. 둘째, 서약과 증언을 관리한다. 셋째, 단지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정도까지 9 U.S.C. 7의 조항 하에서 넷째, 판정을 한다.

(8) 仲裁 進行의 遂行⁵¹⁾

첫째,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고 청문회 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둘째, 청문회의 기록을 원하는 어떤 당사자는 (1) 그러한 기록의 준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그러한 기록의 준비를 중재인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3) 모든 확인된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복사물을 공급한다.

51) 502.408 Conduct of arbitration proceedings. : (a) The arbitrator shall set a time and place for the hearing on the dispute and shall notify the parties not less than five days before the hearing. (b) Any party wishing a record of the hearing shall - (1) B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of such record ; (2) Notify the other parties and the arbitrator of the preparation of such record ; (3) Furnish copies to all identified parties and the arbitrator ; and (4) Pay all costs for such record,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r the arbitrator determines that the costs should be apportioned. (c) (1)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re entitled to be heard, to present evidence material to the controversy, and to cross-examine witnesses appearing at the hearing. (2) The arbitrato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conduct all or part of the hearing by telephone, television, computer, or other electronic means, if each party h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3)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expeditiously and in an informal manner. (4) The arbitrator may receive any oral or documentary evidence, except that irrelevant, immaterial, unduly repetitious, or privileged evidence may be excluded by the arbitrator. (5) The arbitrator shall interpret and apply relevant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legal precedents, and policy directives. (d) The provisions of 502.11 regarding ex parte communications apply to all arbitration proceedings. No interested person shall make or knowingly cause to be made to the arbitrator an unauthorized ex parte communication relevant to the merits of the proceeding,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f a communication is made in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the arbitrator shall ensure that a memorandum of the communication is prepared and made a part of the record, and that an opportunity for rebuttal is allowed. Upon receipt of a communication made in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the arbitrator ma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justice and the policies underlying this subchapter, require the offending party to show cause why the claim of such party should not be resolved against such party as a result of the improper conduct. (e) The arbitrator shall make an award within 30 days after the close of the hearing, or the date of the filing of any briefs authorized by the arbitrator, whichever date is later, unless the parties agree to some other time limit:(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4) 그러한 기록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즉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혹은 중재인의 비용은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셋째, (1) 중재에 대한 당사자는 청취할, 논쟁에 대한 중대한 증거를 제출할,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타난 증거를 상호 검토할 권리가 있다. (2) 만약 각각의 당사자가 참석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로 중재인은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혹은 다른 전자 수단으로 청문회의 모든 혹은 부분을 수행할 수도 있다. (3) 청문회는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행될 것이다. (4) 관련성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불법으로 자꾸 반복되는 혹은 특권화된 증거는 중재인에 의해서 배제된다. 이것을 제외하고 중재인은 어떤 구두 혹은 서면 증거를 받아들인다. (5) 중재인은 관련성이 있는 법과 정규적인 요구, 합법적 전례, 그리고 정책지령을 해석하고 관련된 법을 적용할 것이다. 넷째, 일방적(ex parte) 의사소통에 관한 502.11조항은 모든 중재과정에 적용된다.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중재에서 그 과정의 이점과 관련된 인정되지 않은 일방적(ex parte) 의사소통을, 당사자들이 만약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들거나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의사소통이 이 subpart에 위반된다면, 중재자는 대화에 대한 각서가 준비되도록 그리고 서면으로 남겨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반박의 기회도 허용될 것이다. 의사소통의 접수에서 중재자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사자가 왜 그러한 당사자의 주장이 부적절한 행위의 결과로서 당사자의 반대로 결의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다른 기한을 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청회가 끝난 뒤 30일 내에 또는 중재자에 의해 인정된 요약문의 제출날짜--둘 중 어느 한 날짜가 더 늦은데--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9) 仲裁 判定⁵²⁾

52) 502.409 Arbitration awards : (a) (1) The award in an arbitration proceeding under this subchapter shall include a brief, informal discussion of the f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award, but formal findings of fact or conclusions of law shall not be required. (2) Exceptions to or an appeal of an arbitrator's decision may not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b) An award entered in an arbitration proceeding may not serve as an estoppel in any other proceeding for any issue that was resolved in the proceeding. Such an award also may not be used as precedent or otherwise be considered in any factually unrelated proceeding;(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첫째, (1) 이런 subchapter 하에서, 중재과정에서의 판결은 그것을 위한 사실적이거나 합법적인 원칙의 간단하고 비공식적인 토의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안의 판결이나 법적 결론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예외나 이의는 위원회에 제출되어 질 수는 없다. 둘째, 중재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 과정에서 결의된 어떤 쟁점에 대한 또 다른 토론 과정에 금반언으로 제시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판결은 전례로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관련 없는 어떤 토론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질 수는 없다.

(10) 當事者の 代表⁵³⁾

첫째, 비변호인에 의한 당사자의 대표에 관한 502.27의 조항을 실행하면서, 502.21의 조항은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대표를 적용한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에서 중립인은 분쟁해결절차의 수단으로서 도달한 구속적 합의를 시작하기위한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 참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11) 紛爭解決의 調停과 다른 代替的 手段⁵⁴⁾

- 53) **502.410 Representation of parties.** : (a) The provisions of 502.21 apply to the representation of parties in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s do the provisions of 502.27 regarding the representation of parties by nonattorneys. (b) A neutral in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may require participants to demonstrate authority to enter into a binding agreement reached by means of a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 54) **502.411 Mediation and other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 (a) Parties are encouraged to utilize mediation or other form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ll formal proceedings. The Commission also encourages those with disputes to pursue mediation in lieu of, or prior to, the initiation of a Commission proceeding. (b) Any party may request, at any time, that a mediator or other neutral be appointed to assist the parties in reaching a settlement. If such a request is made in a proceeding assigned to an Administrative Law Judge, the provisions of 502.91 apply. For all other matter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may be requested directly from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who may serve as the neutral if the parties agree or who will arrange for the appointment of a neutral acceptable to all parties. (c) The neutral shall convene and conduct mediation or other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with the parties. (d) Ex parte Communications. Except with respect to arbitration, the provisions of 502.11 do not apply to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nd mediators are expressly authorized to conduct private sessions with parties;(FMC, 46 CFR Part 502, Docket No.01-05, Subpart U).

첫째, 당사자는 모든 정형화된 절차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의 다른 형태와 조정을 이용하기를 조장받는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절차의 초기 전에 혹은 대신하여 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분쟁과 함께 그러한 것을 조장한다. 둘째, 언제나 어떤 당사자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자 혹은 다른 중립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구가 행정부 판사에게 양도된 절차로 된다면 502.91의 조항은 적용된다. 또한 모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서비스는 만약 당사자가 동의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혹은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인의 지명에 합의할 것인가를 연방해사위원회 대체적 분쟁 해결 전문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요구 받을런지도 모른다. 셋째, 중재인은 당사자와 함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절차 혹은 조정을 소집하고 수행할 것이다. 넷째, 일방적(Ex parte) 의사소통, 즉 중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502.11의 조항은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하지 못하고 조정자는 당사자와 함께 비밀회의의 수행을 위해 명백하게 권한 받아야 한다.

IV. 最終 規則 確定에 따른 國內 海事關聯業界 對應 方案

연방해사위원회의 ADR 역시 간이심리(Mini-Trial) 등 다양한 형태의 ADR 절차를 운용하면서 여러 ADR 절차들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의 다양성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므로, 우리나라 해사 관련업계도 더욱 다양한 형태의 ADR 절차를 개발하여 채택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DR 절차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 뿐 아니라 변호사들, 법학교수들 및 법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ADR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조 직역 내 및 해사관련업계 내에서도 ADR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ADR의 특징은 미 연방해사위원회의 최종 규칙에서도 보았듯이, 절차의 비형식성과 융통성, 그리고 당사자의 임의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법원 및 연방해사위원회가 그 절차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

고 볼 여지도 있으나, 양자를 잘 조화시킨다면 ADR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그 조화적 운용의 책임은 각 당사자인 법원과 연방해사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사관련업계에서도 ADR 발전 및 성공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ADR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절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 존재 및 활용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법부와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ADR의 존재 및 그 효용성을 알리는 것은 ADR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원의 판사 뿐 아니라 해사관련인, 사회 각 분야의 중립적 전문가들이 ADR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⁵⁵⁾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화해안의 도출에 활용한다면 그 성공률도 올라갈 것이고,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ADR 절차 및 기법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여러 절차들을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 맞는 좋은 제도를 창안하여 활용한다면, 분쟁 당사자들도 친숙하게 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노력 역시 우리 법조인 및 해사관련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인 것이다.

넷째, ADR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의 정립이 우선 법조 직역 및 해사관련 기관내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ADR이 가장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도 지난 30여년간의 ADR 운동을 거쳐 이제는 법원이 그 주무대가 되고 있는데,⁵⁶⁾ 법원을 포함한 법조 전체 및 해사관련 기관에 확실한 기반을 두어야만 ADR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변하고 쉽게 그 절차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법조

55) 法院에 의한 ADR의 境遇, 調停委員會의 活動을 더욱 強化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調停委員會를 委囑함에 있어 專門職域을 細分化하고, 繼續적으로 教育을 實施하며, 報酬 및 手當의 支給을 現實化하여야 할 것이다.

56) 손수일, “民事調停의 活性化”, 『稅務士』 第13卷 第3號, 韓國稅務士會.

인들과 해사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판사는 심판자라는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당사자들을 돕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호사 역시 사건 수임단계에서부터 화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시작하는 등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과대학, 법률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해사관련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조인들 또는 예비 법률가, 해사 관련인들에 대한 ADR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V. 結 論

본 연구는 미국의 ADR 및 해사관련기구인 연방해사위원회의 ADR 최종 규칙에 관하여 개괄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쟁해결이라는 명제 하에서 그 기본개념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ADR은 사법적 쟁송 절차보다 우월한 제도이거나 완전대체적 제도라고는 할 수 없었고, 오히려 ADR의 역할은 종래의 쟁송절차의 비효율적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타당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소송보완적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하여 ADR과 쟁송절차를 특별히 구별지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들게 될 때에 ADR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 연방해사위원회의 ADR도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신속성, 경제성 이외에 당해 사건의 특성이나 성질에 따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 비공개성, 나아가 산업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소송과는 다른 특징 내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책 관련 내용이다. FMC는 분쟁, 공식적 비공식적 판결, 규정, 강화, 일치의 발행, 면허와 허가의 발행과 취소, 계약판정과 관리, 위원회에 야기된 소송, 공적이고 규정된 위원회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모두 분야에서 ADR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정의 관련 내용이다. FMC는 ADR을 어디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립, 촉진, 조정, 진상조사, 간이심리, 음부즈의 사용 혹은 그들과 결합된 어떤 것을 포함한 논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라 정의하고 있었다. 셋째, 일

반적 권한 관련 내용이다. FMC는 만약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에 동의한다면 논쟁의 쟁점 결정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넷째, 중립인 관련 내용이다. FMC는 중립인은 영구적 혹은 임시적 관리 혹은 연방정부의 직원 혹은 분쟁결정절차에 대해 당사자들이 수락한 개인을 말하며, 논쟁의 쟁점에 관해서 공식적, 제정적, 개인적 대립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밀성 관련 내용이다. FMC는 분쟁해결절차에서 중립자는 자발적으로 폭로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조사절차와 의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분쟁해결의사소통 혹은 중립자에게 기밀로 제공되어, 어떠한 의사소통의 폭로도 요구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여섯째, 중재 관련 내용이다. FMC는 중재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마다 분쟁해결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일곱째, 중재인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다. FMC는 중재인을 중재 청문회의 수행과 과정을 조정하며 서약과 증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여덟째, 중재 진행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FMC는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청문회 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아홉째, 중재 판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FMC는 중재과정에서의 판결은 사실적이고 합법적인 원칙과 간단하고 비공식적인 토의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안의 판결이나 법적 결론은 요구되지 않고 있었으며, 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예외나 이의는 위원회에 제출되어 질 수는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열번째, 당사자의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다. FMC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대표를 적용하고 있었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중립인은 분쟁해결절차의 수단으로서 도달한 구속적 합의를 시작하기 위한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 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열한번째, 분쟁해결의 조정과 다른 대체적 수단과 관련된 내용이다. FMC는 당사자들은 언제나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자 혹은 다른 중립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 열한가지가 2001년 5월 미 연방해사위원회가 발표한 ADR 최종 규칙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FMC's ADR in U.S.
- With the Emphasis on the Final Rule analysis -

Young-tae Park · Woong-jin Kim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is issuing new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The new regulations expand the Commiss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ervices, address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arbitration and providing for mediation and other ADR services. This rule replaces current subpart U-(Conciliation Service), with a new subpart U-(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contains a new Commission ADR policy and provisions for various means of ADR. The rule also revises certain other regulations to conform to the Commission's new ADR policy. So, this paper object was to study on the FMC's ADR in U.S. with the emphasis on the final rule analysis.

Key Words ; FMC,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참 고 문 헌

■ 國內文獻

- 김갑유, “美國 聯邦仲裁法에 관한 紹介”,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96년 봄號.
- 오현석, “Online에 의한 ADR시스템”,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2000년 가을號.
- 이규진, “美國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2000.여름.
- 이충상 “日本の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和解와 調停”, 「裁判資料」第81輯, 法院圖書館.
- 손수일, “民事調停의 活性化”, 「稅務士」第13卷 第3號, 韓國稅務士會.
- 송상현,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의 理念과 展望”, 「民事判例研究」XIV.
- 최동현, “海事仲裁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2001년 가을號.
- 홍광식, “調停의 技術”, 「私法業務研究」第1卷, 釜山地方法院.

■ 國外文獻

- “ACUS n Ombuds,”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November 1990.
- A. Leo Levin and Russel Wheeler, “THE POUND CONFERENCE : Perspective on Justice in the Future,” 1979.
- BBB AUTO LINE Arbitration Rules, October 1998.
- “Business Saves Big Money with the Mini-Trial,” 「Business Week」, Oct 13, 1980.

- 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 Practical Strategy for resolving Conflict」, 1986.
- “Colorado Adopts Ethics Rule,”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CPR), Vol.10, No.5, May 1992.
- Daniel Wise, “Court Will Assign Cases to ADR Firms,” N.Y.L.J., Aug 20, 1992.
- Dina R. Jansens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practicing Law Institute, 1993.
- Dwight Golann, Mediating Legal Disputes : Effective Strategy for Lawyers and Mediators, 1996.
- Eckhoff, T. “The Mediator, the Judge, and the Administrator in Conflict Resolution.”
「Acta Sociologica : Scandinavian review of Sociology」, 1966-67.
- Elizabeth Plapinger and Donna Stienstra, “ADR and Settlement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s,” : A Sourcebook for Judges & Lawyers, A Joint Project of the Federal Judicial Center and the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1996.
- Eric D. Green, “The CPR Legal Program MiniTrial Handbook,” Corporate Dispute Management 1982, at MH-21.
- , “Mini-Tri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CPR Legal Program Mini-Trial Handbook, Corporate Dispute management 1982, at MH-14.
- , “Corporate-Government Contract Dispute : NASA/Spacecom /TRW,” CPR Legal Program, Mini-Trial Handbook, Corporate Dispute management 1982, at NH-45.
- , “Avoiding the Legal logjam-Private justice, California Style, Sec. 1-F.1, F.9.” CPR Dispute Management 1980.

- FMC 46CFR.
- FMC Annual Report.
- Goldberg, Sander, Rogers, "Dispute Resolution," Aspen Law & Business.
- <http://dsa-isis.jrc.it/ADR>
- <http://vmag.org>
- <http://www.arbiter.wipo.int>
- <http://www.bbbonline.org>
- <http://www.clickNsettle.com>
- <http://www.cpb.or.kr/sobi/report/fulltext/991210.html>
- <http://www.cybercourt.de>
- <http://www.cybersettel.com>
- <http://www.disputes.org>
- <http://www.e-mediation.nl>
- <http://www.fsm.de/bes/index/html>
- <http://www.gbde.org>
- <http://www.i-courthouse.com>
- <http://www.internetneutral.com>
- <http://www.iris.sgdg.org/mediation>
- <http://www.kiec.or.kr>
- <http://www.ombuds.org>
- <http://www.onlinemediators.com>
- <http://www.settleonline.com>
- <http://www.transecure.org>
- <http://www.trustedshops.org>
- <http://www.which.com/webtrader>
- James R. Holbrook and Laura M. Gray, "Court-Annexed ADR", 「Journal of Contemporary Law」, 1995.
- J. Kelner and R. Kelner,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and the Courts," N.Y.L.J., July 28, 1992.
- Joseph T. McLaughl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eb 25, 1993,

The American Law Institute.

- Kimberlee K. Kovach, "Mediation : Principles and Practice," 1994.
- Lambros, "The Summary Jury Trial-An Alternative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69 JUDICATURE 286, Feb.-Mar. 1986.
-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pp. 425-426, Spring, 1986.
- Linda R. Singer, "Settling Disputes," Westview Press.
- "Many U.S. Courts Have Adopted ADR Rules, CPR Survey Finds : SJsTs, Mediation Addressed," Alternatives to the High Cost of Litigation, January 1991.
- Mernits, S. Media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 A Sourcebook, 1980.
- Reed, "Control Data Corporation's Ombudsman," IV A.1, CPR Dispute Management, 1980.
- Remarks of Warren E. Burger,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ugust 21, 1985.
- Roger Fisher and Willian Ury, GETTING TO YES :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1981.
- Rubin, J., Brown, B.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1975.
- Simkin, W. "Mediation and the Dynamics of Collective Bargaining," Washington D.C. : Bureau of National Affairs, 1971.
-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Aspen Law & Business(2nd Ed).
-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v. Joseph Macaluso, Inc., 618 F.3d 51 (9th Cir. 1980).
- Zampano, "The Mini-trial in Federal Court : A Judg's View," CPR Dispute Management, 1980.